

자료집

사단법인 광주환경운동연합 창립총회

- 일시 : 2021년 5월 26일(수) 저녁 7시
- 장소 : 광주환경운동연합 3층(대광새마을금고 대강당)

(사)광주환경운동연합

(<http://gj.ekfem.or.kr> / 062-514-2470)

[창립총회 자료집 목차]

1. 설립취지(안)	4
2. (사)광주환경운동연합 정관(안)	5
3. 출연내용(안)	13
4. 임원선임(안) 및 임기결정(안)	14
5.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15

[창립총회 식순]

- 성원보고
- 서기지정
- 안건상정 및 논의
 - 제1호 의안 의장 선출
 - 제2호 의안 설립취지 채택
 - 제3호 의안 정관 심의
 - 제4호 의안 출연내용
 - 제5호 의안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
 - 제6호 의안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 제7호 의안 사무소 설치
 - 제8호 의안 기타
- 폐회

1. 설립취지(안)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정관에 정한 목적 ‘하늘과 땅과 물 그리고 모든 생태계가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위로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들의 생활과 환경운동을 통해 광주와 이 세계를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터로 가꾸어 나기 위하여’ 사단법인 광주환경운동연합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2. 사단법인 광주환경운동연합 정관(안)

전 문

사단법인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989년 3월17일에 광주전남지역에서 환경오염과 공해, 그리고 핵을 추방하여 인간과 자연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할 목적으로 창립한 광주환경공해연구회를 시작으로 1992년 2월 29일에 명칭을 변경하여 창립된 광주환경운동시민연합, 그리고 시대적 요구에 따라 1993년 4월 29일에 전국조직으로 재창립했던 광주환경운동연합의 창립 정신을 계승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광주환경운동연합”, 약칭 “광주환경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 영문명은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in Gwangju”, 약칭 Gwangju KFEM 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 연합은 하늘과 땅과 물 그리고 모든 생태계가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위로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들의 생활과 환경운동을 통해 광주와 전남, 이 세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터로 가꾸어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실) 본 연합의 사무실은 광주광역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 연합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2.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 및 국내외 연대 사업
3. 환경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제도·정책 제안 사업
5. 목적이 유사한 기관·단체·법인과 공동 사업
6. 기타 본 연합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 5조(회원의 자격과 구분)

- ① 본 연합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회원이 될 수 있다.
- ② 본 연합의 회원은 운영회원과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6조(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본 연합의 정관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② 회원 구분에 따른 회비 금액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정관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① 회원은 본 연합이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회원은 자격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상벌)

- ① 본 연합의 발전과 환경운동에 기여한 회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 ②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본 연합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연합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사장 1인
- 2. 이사 5인 이상 10인 이내(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 3. 상임이사 1인
- 4. 감사 2인 이내

제11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궐위된 전임자의 임기가 3분의 2를 지난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임원은 법인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임원간의 분쟁이나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상임이사는 연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13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본 연합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연합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상임이사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며 사무처를 총괄하여 운영한다.
-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연합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연합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4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연합의 최고의결기구로 운영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구분 및 소집)

- ①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 이사장이 소집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60일 한도 내에서 정기총회의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임시총회는 이사회·집행위원회의 의결 또는 운영회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③ 총회 소집시 이사장은 총회에 상정할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개최 7일 전까지 운영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운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운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운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임을 통보한 운영회원은 출석으로 간주하며 위임 회원은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제19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승인,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4. 이사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관한 사항
- 5.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운영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연합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은 이를 소집한다.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회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과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서면결의)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5조(이사회 의결사항)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
2. 사업계획의 운영
3. 예산.결산서 작성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8.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집행위원 선임 및 해임
10. 기타 본 연합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조직

제26조(자문회의)

- ① 본 연합의 제반 사항을 지도하고 자문하기 위해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 ② 자문회의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고문, 감사, 이사장, 부설기관 대표 등 이사장이 지명한 각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7조(고문)

- ① 본 연합은 고문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상임고문을 둔다.
- ② 고문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28조(집행위원회) 본 연합의 목적 및 사업 실행을 위해 이사회 산하에 집행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 (부설기관) 본 연합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이사회 의결로 부설기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회원모임)

- ① 본 연합은 목적달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회원모임을 둘 수 있다.
- ② 회원모임 설립은 집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사무처)

- ① 본 연합은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 산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가 총괄한다.
- ③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본 연합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① 기본재산은 본 연합 설립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 연합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제39조의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수입금) 본 연합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35조(회계연도) 본 연합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6조(예.결산)

- ① 본 연합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1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② 본 연합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39조(정치활동제한) 본 연합의 임원과 부설기관의 장 등 주요 직책을 갖는 회원에 대하여는 정치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법인해산)

- ① 본 연합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운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본 연합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운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기부금 결산보고) 본 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43조(관계법령의 준수) 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3. 출연내용(안)

재 산 구 분		수량	소재지	평가액(원)	취득 원인	비고
기본 재산	현금	1계좌	광주은행	5,000,000	출연금	
	【소계】	-	-	5,000,000	-	
운영 재산	임대보증금	212.58㎡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40,000,000	출연	
	컴퓨터	6대	"	3,000,000	"	
	복합기	1대	"	500,000	"	
	책꽂이(대)	10개	"	500,000	"	
	접이식 테이블	10개	"	200,000	"	
	사무용책상	6개	"	180,000	"	
	사무용의자	6개	"	120,000	"	
	회의용의자	30개	"	300,000	"	
	【합계】	-	-	44,800,000	-	
【총 계】		-	-	49,800,000	-	

4. 임원선임(안) 및 임기결정(안)

1) 임원선임(안)

- 이사장 : 박태규
- 이사 : 최홍엽, 박미경, 이철갑, 임낙평, 박병섭
- 상임이사 : 이경희
- 감사 : 노희정, 김길수

2) 임기결정(안)

- 임기 : 2021년 5월 26일~2024년 1월(정기총회)까지

5.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사업계획서

I. 주요사업 목표

1. 성장주의 반성과 대안사회로의 전환, 생태민주주의 실현(차기 대선, 지방선거에서의 의제화)
2. 기후위기 시대, 시민의 힘과 활동 역량을 바탕으로 실행 성과와 대안 발굴
3. 디지털 사회로의 적응, 온오프 공간과 방식의 다변화 모색. 활동의 탄력화와 소통 활성화
4. 전문성 강화 및 조직 활성화.

II. 세부사업 내용

1. 회원 시민 참여 사업

1) 일상적 회원확대

·기간 : 연중

·내용 : 임위원의 회원확대 목표 설정하고 관리함으로써 일상적 회원확대활동 전개

2) 회원확대캠페인

·기간 : 4월 1일~4월 30일

·내용 : 임위원을 비롯한 전 회원들이 참여하는 회원확대캠페인, 1+1, 1+2 등의 회원 확대 활동

3) 회비 증액 활동

·기간 : 회원확대캠페인 기간

·내용 : 회비 증액 요청을 통해, 자발적 회비 증액 운동 전개

4) 홍보·소통 : 웹소식지 '자연지기', 문자 알리미 발송

·기간 : 월 2회

·내용 : 활동소식, 행사 안내 등을 중심으로 이메일 뉴스레터와 문자 발송

5) 홍보·소통 : 홈페이지, SNS, 블로그는 소셜 미디어 활용

·기간 : 연중

·내용 : 홈페이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 활동 소식 홍보

2. 기후 보호 및 에너지 전환, 탈핵

1) 기후위기 대응 시민 실천단

· 기간 : 연중

· 내용

- 시민과 회원이 참여하는 생활 주기형 기후대응·에너지전환 함께 실천 활동
- 주1회 채식, 주1회 이메일·드라이브 지우기 등
- 실천과제 홍보와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 만들기

2) 2045 탄소중립·에너지자립도시 정책 모니터링 활동

· 기간 : 연중

· 내용

- 광주시가 발표한 2045 탄소중립·에너지자립도시 정책 추진 과정을 모니터링
-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평가 및 제언

3) 에너지전환 시민교육

· 기간 : 연중

· 내용

- 기후위기, 에너지전환을 위한 대중교육
- : 기후위기,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본 소양 교육
- : 학교, 주민모임 등 지역사회구성 위한 기후위기, 에너지전환교육
- 시민발전소&시민에너지협동조합
- 에너지전환 시민사회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워크숍)

4) 탈핵운동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한빛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의 간사단체 역할 수행
- 탈핵활동가 역량 강화 및 활동 활성화
- 시민대상 홍보활동, 시민참여활동 전개
- 지역 핵발전소 현안의 적극적 대응

[특별사업- 동아시아 기후네트워크]

□ 사업목적

- 기후변화를 이해하고 탄소저감실천활동 확산을 위한 국제연대활동
- 파리협정 이후 신기후체제 원년, 동아시아 3국의 기후위기 정책을 점검하고, 각국의 시민사회활동 공유

□ 사업개요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 한국사무국 역할 수행
- 2021년 제7회 동아시아기후포럼 개최
- 한·중·일 석탄화력발전소 대응을 위한 활동 확장 및 지속가능한 활동 모색

□ 사업내용

1. 2021년 제7회 동아시아 기후포럼 개최

· 기간 : 2021년 10월경

· 장소 : 여수시

· 내용

- 제7회 동아시아 기후포럼 준비위원회 구성

: 지역, 활동분야 등을 고려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포럼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계획 수립

- 목표 : ‘코로나19’, ‘신기후 체계’ 등의 배경을 진단하고, 동아시아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국제연대활동 모색

2. 동아시아 기후네트워크 활성화

· 기간 : 연중

· 내용

-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 조직 역량 강화

- 파리협정 이후 신기후체계 인식 확산과 국제연대 여론 활성화

- 상시활동, 공동추진활동, 활동 지속성과 안정화를 위한 전략 논의

- 온라인 간담회, 토론회 등을 위한 논의 활성화

□ 기대효과

- 한중일 3개국의 기후정책 감시활동과 지속적인 동아시아 연대 활동전개

3. 환경교육 사업

1) 환경 교육프로그램 인증활동

· 기간 : 하반기

· 내용 : 자연나들이 등 어린이자연학습프로그램의 인증

2)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역량 강화

· 기간 : 연중

· 내용 : 지역사회에 필요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민강사 양성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의 실행력 확보

3) 어린이 자연교육프로그램 진행

· 기간 : 상반기 3회(4월~6월), 하반기(9월~11월)

· 내용

- 무등산 평촌, 청풍마을 등을 중심으로 자연체험활동 진행

- 교사 1인, 학생 10인내외로 3-4개팀으로 구성하여 활동

4. 생태도시 만들기

1) 무등산 난개발 대응

- 무등산 신앙개슬신축반대 시민연대의 무등산 난개발 대응기구로 확장
- 무등산 난개발 대책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2) 도심 난개발 대응

- 상업지역, 재개발지역 등 고층화위주의 도시개발의 대안 모색
- 관련 조례, 지침 등의 개정 활동
-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대응, '전·일방 부지 공공성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 연대 등

3)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감시

-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혁신 및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감시, 대안제시 활동

5. 물하천 사업

1) 지역 하천 자연도·오염원 조사

- 기간 : 5월 ~ 9월
- 장소 : 광주천, 황룡강, 풍영정천 등 주요 하천, 지류하천
- 내용 :
 - 하수유입 문제, 하천 복개, 인공화, 직강화 등 하천의 문제 파악
 - 하천 오염원 등 조사를 통해 하천사업·관리에 대한 개선 요구

2)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습지 보호지정과 이후 보전활동

- 민관 협력, 연대를 통한 장록습지 보전과, 지역민을 위한 참여 활동 전개
- 황룡강 보전 및 복원 운동 전개 (황룡강 상류~ 하류)

3) 영산강 복원과 유역 보전을 위한 위한 간담회, 토론회

- 기간 : 10월
- 내용 : 영산강 복원에 대한 정부 추진현황 파악, 지천 등 문제와 함께 하천복원, 재자연화를 위한 공론의 장 마련
 - 영산강 모니터링 활동 공유, 주요 하천 의제 공론화(하굿둑, 지류 현황 등)
 - 하천부지 개발 확대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
 - 물의제에 대한 상설 논의기구(거버넌스 협의체) 제안 등

6. 자원순환, 안전한 생활환경

1) 자원순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역량강화교육

- 일자 : 연중
- 내용 : 상반기 전문가 역량강화교육, 성인 대상 교육안 개발. 자원순환 강사단 용역C 중심으로 매월 정

기모임과 워크숍을 통해 주제별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보완을 지속함

2) 재활용 체계 개선 토론회

- 기간 : 5월
- 대상 : 지자체 담당자, 시민단체 등
- 내용 : 광역회수센터 설립, 재활용선별장 실태조사 결과 공유 및 개선방안 논의

3) 1회용품 안 쓰기 시민도전단

- 기간 : 7~9월
- 대상 : 시민 100여명
- 내용 : 2개월간 생활 속 1회용품 안쓰기 단계별 도전 진행으로 시민인식 확대 및 홍보

4) 유해화학물질 대응 및 개선운동

- 기간 : 연중
- 내용 :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사용 우려 기업체에 대한 감사 견제 역할
 -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대응과 시민들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지원활동을 일상적으로 전개

5) 미세먼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일자 : 연중
- 내용 : 미세먼지 일반정보 외에 시민실천, 환경영향을 중심으로 한 미세먼지 교육 프로그램, 교구 개발 및 운영

7. 전국 및 지역 연대

1) 광주시민단체협의회

- 운영위원회, 정책위원회 / 매월
- 지역 현안 대응
- : 차기대선 및 지방선거 관련 정책제안 준비 지역사회 중요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 : 5.18기념행사, 민관거버넌스(협치) 등 주요 사업 연대

2)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등
- 거버넌스 실천사업 분과별 참여
- 기타 협력 사업 진행(푸른광주의 날 등)

3) 전국현안 대응

- 차기 대선 정책 대응, 토건사업 대응, 국립공원 보전 및 국토난개발 대응
- 탈핵(핵폐기물, 발전소 안전문제), 유해화학물질, 4대강재자연화 등

예산(안)

1. 총괄표

수입 예산 총액	지출 예산 총액	비고
70,050,000	2,5250,000	

2. 수입 예산서

(단위 : 원)

수입 항목	예상 수입액	산출근거
① 회 비	5,250,000	15,000원*50명*7개월
② 후원금	15,000,000	500,000*30명
③출연금	49,800,000	기본재산, 운영재산
합계	70,050,000	

3. 지출 예산서

(단위 : 원)

지출 항목	예상 지출액	산출근거
①경상비(인건비, 운영비)	4,200,000	600,000원*7개월
② 목적 사업비	15,000,000	환경 교육홍보사업, 조사사업
③ 예비비	1,050,000	예비비
④ 기본재산 편입액	5,000,000	기본재산
합계	25,250,000	